

전주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1나13878 판결 [계약금 등 반환청구]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계성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김용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재희

변 론 종 결 2022. 12. 1.

판 결 선 고 2023. 1. 19.

제1 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 12. 7. 선고 2020가단32673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 중 9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18.부터, 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8. 13.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의 계약해제에 따른 중도금 반환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추가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피고의 계약 해제에 따른 중도금 반환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2018. 12. 10. 이 사건 계약을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하였더라도, 피고는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기지급 중도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가진다 (대법원 1997. 12. 9. 선고 96다47586 판결 등 참조).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법률상의 원인 없는 사유를 계약의 불성립, 취소, 무효, 해제 등으로 주장하는 것은 공격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중 어느 사유를 주장하여 패소한 경우에 다른 사유를 주장하여 청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할

수 없다. 또한 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치는 것이므로, 그 당시 당사자가 알 수 있었거나 또는 알고서 이를 주장하지 않았던 사항에 한해서만 기판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다231928 판결).

2) 구체적인 판단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전소에서 이 사건 계약의 취소를 원인으로 매매대금반환 청구를 하였으나 이에 대해 패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 예비적 청구로 피고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으로 중도금의 반환을 청구하고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전소와 그 법률상 원인 없는 사유를 다르게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여 전소와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고, 전소와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이 동일하다. 원고의 주장사실은 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전에 발생한 사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선행사건에 의한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내용의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선, 판사 이국진, 판사 박성수